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제·개정 이유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 ('24.1.23. 공포)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제·개정 내용

-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(안 제9조의8 신설)
-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절차 마련(안 제9조의9 신설)
-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(안 제9조의10 신설)
-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(안 제9조의11 신설)
-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(안 제9조의12 신설)
- 보호조치 운영·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(안 제9조의13, 안 제9조의14 신설)
-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(안 제9조의15 신설)
-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(안 [별표9] 개정)

3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4. 입법효과

-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, 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, 연계정보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연계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 기반 마련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